

EU정부의 FP 8차 중소기업 기술혁신력 강화정책에 관한 연구

김진숙*

*남서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e-mail:mktjskim@nsu.ac.kr

Research on the FP 8th about EU SME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Jin-Suk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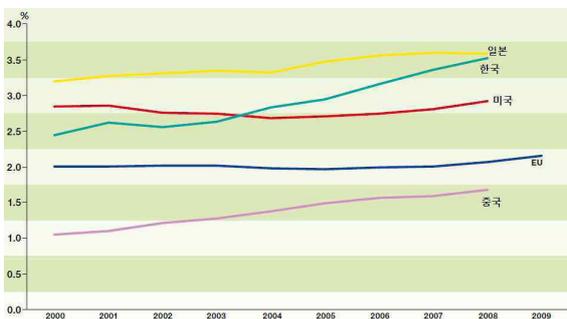
*Dept of Int. Business,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유럽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력 강화를 위한 법령 및 규정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정부에 주는 중소기업 기술혁신력 강화 시사점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 서론

EU는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EU는 R&D 지출비중이 미국 및 일본에 비해 특히 기업부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해 이러한 국가와의 R&D 격차가 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EU는 그원인을 EU 경제내 하이테크 제조업 부분의 규모가 미국에 비해 작고 EU 내 존재하는 하이테크 제조업 부분의 연구집약도도 미국 드앵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참고 [그림 1]).



[그림 1] 세계 주요국가 GDP 대비 R&D 지출비중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EU전체 경제에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유럽은 지난 2011

년 2월 유럽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t시행을 맞아 동법 시행 현황 전반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은 중소기업의 숙련도 제고와 혁신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투자, 국제영구, 클러스터에의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럽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력 강화를 위한 법령 및 규정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도록 한다.

2. EU FP 8차 중소기업 제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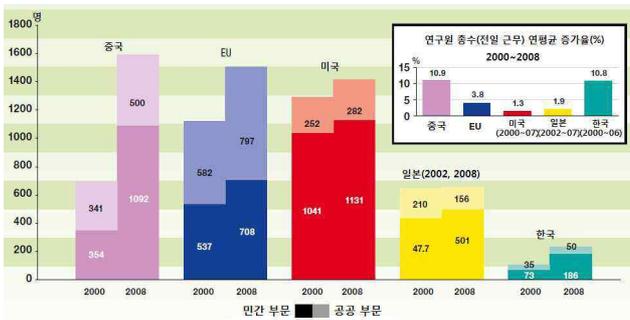
2.1 유럽 중소기업 기술혁신력 현황

유럽의 중소기업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숙련도가 높은 다양한 이진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다.

2008년 EU의 전일 근무연구자 수는 전체 약 150만 명으로 미국 140만명 일본 71만명보다 많았으나 중국의 160만명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U전체 연구자 중 46%만이 민간부문에 종사하고 dLTdj 중국 69%, 일본 73%, 미국 80%에 비해 민간부문 연구자 비중이 현저히 낮다. EU가 2020년 GDP 대비 R&D 총지출 목표치 3%를 달성한다면 최소 10만개

이상의 연구부문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어 특히 기업 부문 연구자 수 증가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의 중소기업은 지난 15년 동안 EU 경제 내에서 서비스 부문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줄어 들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R&D의 집약도가 낮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 비중의 증가로 최근 EU회원국 대부분에서 상승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 연구집약도가 상쇄될 수 밖에 없다(참조 [그림 2]).



[그림 2] 세계 중소기업 전일 근무연구자 수

2.2 EU 8차 FP 중소기업 기술혁신력 강화정책

유럽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유럽 중소기업법을 제정하고 2008년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10대 원칙하에 유럽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총 86개 실천사항을 관계 법령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유럽중소기업법 10대 원칙으로는 기업가 및 가족기업이 번창하고 기업가정신이 보상을 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판산 위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가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우선 원칙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제정토록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니즈를 행정에 반영토록 한다. 다섯째 공공정책수단을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게 조정토록 한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상업거래에서 대금지불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및 사업환경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는 중소기업이 단일시장에 따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한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의 숙련도 제고 및 혁신을 활성화토록 한다. 아홉 번째로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환경 관련문제를 기회를 탈바꿈토록 한다. 열 번째 중소기업이 시장 성장으로부터 편익

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토록 한다.

3. EU 8차 중소기업 강화법의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숙련도 제고와 혁신 활성화를 위해서 유럽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이 중소기업의 연구투자, R&D 지원 프로그램, 국제연구, 클러스터에 대한 참여, 적극적인 지식재산권의 관리 등을 촉진해야 한다.

유럽기업의 상당수는 학교교육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역량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신기술 분야에서 숙련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구 및 혁신이 가지는 잠재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2010년 동안 견습생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이 2007년에서 2013년 까지 진행되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U회원국들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이 혁신 클러스터 참여를 유도해 이들이 국제화와 고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와 EU회원국들은 단일시장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와 정보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단일시장으로부터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 개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이해를 반영하고 중소기업들이 특허와 상표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유럽 중소기업들은 다른 회원국들에서의 사업기회와 적용 규정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언어 능력이 충분치 않아 단일 시장의 편익을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들은 표준개발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표준개발에 충분히 참여하고 또한 인증절차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표준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럽차원에서 유럽공동체 특허 및 유럽연합 특허재판권 체제를 설립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4. 유럽 회원국 별 중소기업 기술혁신력 현황

유럽위원회는 그동안 나타난 중소기업법의 성과와

현재의 경제환경에서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법 시행현황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유럽위원회는 혁신 연구정책인 혁신 공동체(Innovation Union)의 중심을 기업가와 중소기업에 두고, ‘아이디어의 시장화’와 학생 및 연구자들의 기업가적 사고방식 고취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창업기업과 고성장 기업에 대출, 벤처자본, 위험분담 금융 등의 새로운 금융수단을 제안하였다.

유럽연합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 간소화, 적절한 지식재산권행사, 조달 예산의 전략적 사용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연구센터, 과학계 실무자들이 지식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국제 클러스터를 지원한다.

국가별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혁신적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이노베이션 바우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투입자본(Seed capital)과 벤처 자본을 통해 혁신적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들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영국 그리고 독일이다.

대학, 연구센터 기업과 연계된 니노베이션 센터 또는 경쟁력 거점(competitiveness pole)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로는 호주, 벨기에, 체코,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고 영국이다. 중소기업이 바우처를 구매해 혁신이나 노하우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이노베이션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네델란드, 포르투갈르 슬로베니아 그리고 영국이다. 기타 이태리는 혁신적 중소기업의 네트워킹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기업 네트워크 정비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 금융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5. 유럽 중소기업 기수혁신력 관련법의 향후 시책

4. 유럽 중소기업법의 혁신관련 향후 시책

유럽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투자, 성장, 혁신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수를 확대하는 한편, 2011년 중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클러스터와 네트워크 전략을 개발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2010년동안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견습생의 이동성을 촉진하고 있다. 제 7차 FP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간소화, 제공정보의 수준제고, 자금조달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FP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기간 중 지원한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으로서 받을수 있는 혜택을 그대로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일반면제규정을 통해 연구, 개발, 혁신을 지원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가보조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혁신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고성장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간 클러스터 협력을 촉진하고, 클러스터가 신시장으로 적극 접근할수 있도록 하면, 중소기업들이 혁신 클러스터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클러스터 전략을 개발하였다.

참고문헌

[1] European Commission, "Think Small First"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2008.
 [2] European Commission, Review of the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2011.